



Keeping
Children
Safe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Child Safeguarding) 기준과 이행방법

모든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서문

이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기준은 구호 및 개발 단체들의 연대체인 Keeping Children Safe(이하, KCS)에 의해 12년 전, 2003년에 개발되었다.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기준이 만들어진 이후로 기관의 직원 및 관계자뿐만 아니라, 부적절하게 기획된 사업과 부실한 운영관리 또한 아동을 위험에 빠뜨리는 주요 원인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KCS는 관련 분야의 기관들이 “Do No Harm(해를 입히지 않음)” 원칙과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에 기반하여 아동을 모든 형태의 학대, 방임, 착취, 폭력으로부터 보호 할 것이라는 약속을 대표한다.

KCS는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기준을 개발하였고, 이 기준을 실행할 수 있는 종합적인 툴킷(Toolkit) 또한 제시하였다.

아동에 대한 폭력을 연구한 유엔의 독립적 전문가 파울로 세르지오 핀헤이(Paulo Sergio Pinhei)는 이 툴킷은 “아동과 함께 일하는 관련자들의 역량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아동에게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기준이 발간된 이래, 전 세계적으로 수 백의 기관과 수 천명의 전문가들이 이 툴킷을 활용해왔다.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기준에 대한 수요의 증가는 아동과 함께 일하거나,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아동과 접점에 있는 사람이라면 아동을 보호할 책임을 가진다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란?*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란 임직원, 기관 운영, 사업수행 등의 모든 영역에서 아동이 해를 입지 않도록 보장하는 기관차원의 책임을 의미한다. 즉, 아동을 모든 피해 및 학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며,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기관에 이를 보고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을 의미한다.

“Do No Harm(해를 입히지 않음)”원칙은 인도주의 분야에서 주로 적용되어 왔으나 개발 분야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 원칙은 개발협력 기관들이 의도치 않게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책임을 명시한 것이다.

* ‘아동보호’(Child Protection)는 아동에 대한 폭력, 착취, 학대에 맞서기 위한 예방과 대응을 의미하며,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Child Safeguarding)는 ‘아동보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관 차원의 책임과 제도적인 장치를 말한다. ‘아동보호’(Child Protection)는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Child Safeguarding)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영문 원본에서의 ‘Child Safeguarding’은 본 문서에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로 번역하였다.

본 가이드 활용하기

이 가이드는 아동보호의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기관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가이드는 2001년 개정된 것으로 기관이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어떤 요소들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개괄을 제공한다. 또한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절차를 새롭게 개발하거나 실행 계획을 수립할 때 또는 기존의 정책과 절차를 강화하고자 할 때 참고할 수 있다.

이 가이드에는 기관이 보다 깊이 있게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기준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다양한 톨과 사례들이 포함되어 있다.

더 많은 정보는 www.keepingchildrensafe.org.uk/resources 를 참조

참고: 정책과 절차의 개발 및 이행에 있어 아동과 지역사회, 주요 직원과 기관 운영진이 적절히 연관되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종합적 접근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의 종합적 접근은 기관(직원, 사업수행 및 기관운영)이 아동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한 잠재적 위험요인과 아동에게 안전한 기관을 만들기 위한 조치들을 함께 제시한다.

위험요소를 인지하고 관련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기관의 전략과 거버넌스에 있어 필수적이다. 위험요소를 사전에 더 많이 예측할수록 더 많은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당신의 기관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며, 그것에 어떤 위험이 잠재되어 있는가?
- 위험을 예방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는가?
- 기관 내에서 아동 관련 세이프가드를 위한 이슈를 보고받고 대응하며 조사를 담당할 수 있는 전담인력으로 누가 적절할 것인가?
-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와 관련하여 기관에서 직원 개인에게 기대하는 바는 무엇이며, 문제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인식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에서 어떠한 신입직원 및 상시 교육 과정이 마련되어야 하는가?
- 행동강령에 근거하여 모든 직원들이 아동과 함께 일함에 있어 적절한 행동과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가?
- 어떻게 아동에게 안전한 인력을 채용할 것인가?

그러나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정책과 절차가 견고하게 마련되어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기관 내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위험의 정의

문화와 상황적 맥락에 따라 아동학대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위해(harm)”를 정의 내리기는 쉽지 않다. 아동은 가정, 시설, 지역사회, 종교단체를 비롯하여 대중매체, 소셜미디어, 인터넷 상에서도 학대를 당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은 한 명의 성인, 다수의 성인 또는 한 명의 또래 아동, 다수의 또래 아동으로부터 학대를 당할 수 있다. 또한 여성할례(FGM), 강제결혼 및 조혼 등의 악습 또한 아동에게 위해를 가하는 심각한 요인이다.

아동이 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아래의 정의를 참고할 수 있다:

신체적 학대: 타인, 즉 성인 및 아동 등이 가하는 직접적이거나 잠재적인 신체적 피해를 말한다. 때리기, 흔들기, 독극물 먹이기, 물에 빠트리기, 화상 입히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부모나 양육자가 아동질병에 대한 증상을 조작하거나 고의적으로 질병을 야기하는 행위도 신체적 학대가 될 수 있다.

성적 학대: 아동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며 동의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없는 상태에서 성 행위에 가담하도록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강간, 구강성교, 삽입 또는 자위, 키스, 문지르거나 만지는 등 삽입하지 않고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성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것에 아동을 참여시키고, 이를 보게 하는 행위, 아동이 성적으로 부적절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도 포함된다.

아동 성 착취: 돈, 선물, 식량, 숙소, 보살핌, 지위, 또는 아동이나 아동의 가족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성 행위에 아동을 참여시키는 성적 학대의 유형을 말한다. 보통 아동과 친해지거나 신뢰를 얻음으로써 또는 마약과 알코올을 통해 아동을 조종하거나 강요하는 방식으로 행해진다.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학대 관계는 피해자의 권한이 제한되는 불공정한 권력 관계와 관련이 있다. 즉, 아동과 성인 간의 합의하에 이뤄진 행위일지라도 일종의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

아동 성 착취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연장자인 가해자가 나이가 어린 사람을 금전적, 정서적, 신체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비롯해, 가해자가 또래의 피해자를 조종하거나 강요하여 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때때로 범죄조직 그리고 갭단에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에서 일어나기도 한다. 어린 피해자들을 인신매매하여 다양한 지역에서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행위를 하게함으로써 가해자가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방임과 보호 태만: 방임과 보호 태만은 아동이 처한 상황과 환경, 가진 자원을 감안하되,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조차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반복적으로 무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아동의 건강,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심리적 발달에 심각한 장애를 미칠 수 있다. 방임과 보호 태만은 아동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거나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는 것과 영양, 주거, 안전한 삶과 일의 터전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임신 기간 중 마약이나 알코올을 남용하는 등 모성 방임과 장애아에 대한 방임과 학대도 포함할 수 있다.

정서적 학대: 아동의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를 말한다. 행동의 제지, 비하, 모욕, 괴롭힘(사이버 상의 괴롭힘 포함)과 협박, 겁주기, 차별, 조롱 또는 그 밖의 비신체적인 형태의 적대적이거나 거부적인 대응을 포함한다.

상업적 착취: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현장 또는 다른 활동에서 아동을 착취하여 아동이 신체·정신적 건강과 교육, 도덕·사회정서적 발달에 손상을 입게 되는 것을 말한다.

잠재적 위험요소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위배사안이 제기되는 경우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관련 조언을 구하거나 조치를 취해야 할 때가 언제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러한 위배는 기관의 잘못된 관행 때문이거나 혹은 누군가가 아동을 위험에 처하게 하거나 위협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다음은 적절한 조치/대응이 필요한 우려사항들의 예시이다.

A

당신의 기관은 아동이 아닌 성인들과 주로 일을 하는 기관이다. 주요 사업은 농촌지역에서 주민들의 생계와 경제활동을 개선하는 것이다. 당신의 기관은 여성들에게 기술훈련을 제공하고, 여성들이 시장과 소액대출의 기회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매우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프로그램 평가 시 주민들에게 의도치 않았던 결과들이 있었는지 질문을 하였다. 일부 여성들이 참여하는 동안 자녀들을 집에 혼자 남겨두게 되어 자녀들의 안전을 걱정해야 했던 애로사항을 토로하였다.

B

베이커(Baker)씨는 당신 기관의 고령자이자 가장 너그러운 후원자 중의 한 명이다. 수 년 간 그는 자신이 후원해 온 아동들을 방문했었다. 그런데 당신은 그 후원자가 아동에게 폭력적인 이미지를 소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최근 성인이 된 후원아동에게 자신을 방문할 수 있도록 여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B

현지 남자직원이 결혼하겠다고 며칠 간의 휴가를 요청했다. 얼마 후 그의 신부가 14살인 것이 밝혀졌다.

C

당신의 기관이 참여하는 아동권리 회의에 사업에 참여하는 아동들을 데려갔다. 이 아동들이 회의에 참여하기 위해 집을 떠나 있는 동안 보호자로 자원봉사자들이 동행했다. 그런데 회의가 끝난 후 자원봉사자들 중 한 명이 회의 기간 중에 아동을 학대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게 되었다.

D

당신의 기관은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여아와 그 가족의 사진 및 이야기를 실은 후원자용 온라인 출판물을 제작했다. 당사자와 가족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출판되는 것에 동의했었다. 출판물이 배포된 지 일주일도 지난 어느 날 마을의 지도자들이 온라인에 게재된 내용을 보고 여아와 그 가족들에게 분노하여 그 마을에서 추방한 사실을 담당 직원에게 보고 받았다.

E

당신의 기관은 아동들을 위한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한 여아가 담당자에게 자신의 친구를 걱정하는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친구는 학교를 자주 결석하고 집에서도 가출한 상태라고 한다. 친구는 집에 있으면 불행하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는 것이고 가출한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 줄 것을 부탁했다고 한다. 그 여아는 방과후 교실 담당직원에게 친구의 이야기를 비밀로 지켜주되, 상황이 나아지도록 도와줄 수 있는지 물었다.

A 아동에게 안전한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기획

중점 사업과 그 대상이 누구인지 관계 없이, 모든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은 아동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행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아동이 처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 하도록 기획되어야 한다.

아동에게 안전한 프로젝트는 지역의 환경, 상황 그리고 수행과정에서 아동 및 주민들에게 미치는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 영향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사회나 국가의 경제, 법치 및 거버넌스의 증진을 활동의 목적으로 하는 기관도 아동의 안전을 포함한 엄격한 사회 및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역시 잠재적으로 아동에게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기관은 그들이 일하는 지역의 상황을 파악하고, 모든 프로그램이 내포하는 위험요인을 평가하여 프로그램에 적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 이행 단계에 추가적인 안전 전략을 포함할 수 있고 아동에게 보다 안전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다.

B 직원, 자원봉사자 및 관계자들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 줄이기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기관의 직원, 자원봉사자, 관계자 등이 고의적으로 또는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아동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기관은 행동강령, 채용 절차, 교육/훈련과 내부 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해 직원, 자원봉사자, 관계자 등에 의한 아동학대가 용인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기관의 직원, 자원봉사자 및 기타관계자들은 기관 내 사업수행 과정에서 접촉하는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가질 뿐만 아니라, 업무 외 상황에서도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C 아동에게 안전한 행사 및 활동 운영하기

대부분의 행사와 활동은 아동에게 재미 그리고/또는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활동을 계획할 때, 아동에 대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아래의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 가족이나 지역사회가 아동이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 기관이 행사와 활동을 진행하는 시기가 아동이 집안 일이나 생계를 위한 일을 도와야 하는 시기일 수 있다는 점
- 아동이 가족의 보호를 떠나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서 행사 및 활동에 참여할 경우 특별히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점

D 미디어에서 아동정보를 다룰 때 주의하기

대부분의 기관은 사업을 홍보하고 후원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아동과 가족 그리고 그들이 거주하는 마을 등의 이미지와 스토리를 활용한다.

부적절한 아동의 정보, 스토리, 시각적 이미지(사진, 비디오, 소셜미디어) 등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아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 아동이 옷을 벗고 있거나 부적절한 자세를 취한 상태의 이미지를 노출해서는 안 된다.
- 이미지에 첨부되거나 스토리에 포함된 세부정보로 인해 아동이 살고 있는 집이나 마을의 위치가 추적 당할 수 있는 여지를 두어서는 안 된다.
- 아동이 거주하는 곳이나 일하는 곳을 노출할 때에는 장소를 분별할 수 있는 건물, 도로 표지판이나 랜드마크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 사진 촬영 시 위치태그(geotagging, 디지털 매체 내에 위치를 알 수 있는 정보를 삽입시키는 것) 기능은 비활성화 해야 한다.
- 채용된 사진가/언론인/통역사 등은 적절하게 심사되고 증빙 서류 점검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 아동의 이미지를 촬영하고 정보를 활용할 경우 아동과 아동의 부모/양육자에게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한다.

E 지역사회 아동학대 사건 보고하기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기관의 사업 수행이나 운영에 기인한 것이 아닐지라도 기관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안이나 실제로 발생한 사건에 대해 보고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사안은 공식적으로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데, 혹 정부 당국이 취약하거나 부패했을 경우에는 아동학대 사건에 적절하게 대응 할 수 있는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 절차는 지역사회 단위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보고 및 조사과정에서 아동과 그 가족이 또 다른 위험에 처하거나 취약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적절한 안내와 지침이 제공되어야 한다. 24페이지의 기준 3항을 참조하라.

기준

KCS 기준은 다음의 4가지 영역을 포함한다.

기준 1: 정책

기관이 어떻게 아동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예방하고, 적절하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말해 주는 정책을 개발한다. [13페이지](#)

기준 2: 인력

기관은 직원과 관계자에 대한 명확한 책임과 기대를 부여하고 그들이 방침에 따라 이해하고 행동하도록 돕는다. [17페이지](#)

기준 3: 절차

기관은 전사적으로 적용되는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절차 이행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24 페이지](#)

기준 4: 책무성

기관은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에 대한 방안을 모니터링하고 검토한다. [40 페이지](#)

일반 원칙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기준은 아래의 원칙에 근거한다:

- 모든 아동은 동등하게 위험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아동을 보호할 책임을 가진다.
- 기관은 함께 일하거나, 관계를 맺거나, 기관의 업무와 운영의 영향을 받는 모든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 기관이 타 기관과 협력하는 경우, 파트너 기관 또한 아동보호 최소 기준을 준수하도록 지원 할 책임이 있다.
-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와 관련된 모든 활동은 무엇보다 아동 최우선 이익의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

왜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기준이 필요한가?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기준은 물품이나 서비스 전달 시 질을 담보하기 위해, 그리고 이용자 및 수혜자들에 대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모든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원조 및 개발분야에서는 기관의 사업, 운영, 인사관리 등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수많은 기준들이 존재한다. 국제적 차원에서의 글로벌 기준과 원칙들 가운데에도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와 관련된 원칙들이 있다. 아동노동의 영향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인도주의 분야에서도 통용되는 여러 기준이 있는데, 이는 기관의 사업 수행, 인력, 운영 등에 있어 “Do No Harm (해를 입히지 않음)”의 원칙을 확립한다. 이러한 기준에는 인도지원에서 아동보호를 위한 최소 기준(The Minimum Standards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CPMS), 2012, CPWG); 2010 책무성과 질적 관리를 위한 HAP 기준 (The 2010 HAP Standard in Accountability and Quality Management, 2010, HAP International); 인도주의 현장과 인도적 대응의 최소기준(The Sphere Handbook -Humanitarian Charter and Minimum Standards in Humanitarian Response, 2011, Sphere Project); 원조분야 직원의 관리와 지원에 관한 실천규약 (Code of Good Practice in the management and support of aid personnel, 2003, People in Aid) 등이 있다.

KCS의 기준은 기관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핵심 요소를 설명하며,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세부사항들을 제공하고 있다.

본 기준은 기관이 사업수행, 기관운영이나 직원 및 파트너들에 의한 아동학대의 위험을 예방하고,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기관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좋은 실천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즉, 아동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인 기준을 제공하고 다른 기준 및 원칙과 조화를 이루도록 돕는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기준을 도입/적용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 그러한 기준에 아동과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KCS 기준을 활용해야 한다.

지역차원에서 기준 적용하기

본 기준은 모든 상황에서 적용 및 달성 가능하도록 작성되었다. 그러나 국가 혹은 지역의 상황과 맥락에 따라 이행하기 어려울 수는 있다. 지역에 따라 있을 수 있는 어려움은 다음과 같다:

- 지역 및 중앙정부 당국에 아동학대 사건을 보고하는 것이 매우 복잡할 수 있다. 이 때 국가 및 지역 단위에서 아동학대 사건 대응에 관한 적절한 자문을 제공해주는 기관이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기관들을 파악해야 한다.
- 국내법으로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준을 적용하고 실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동허용연령이 18세 미만인 지역과 18세 미만 아동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지역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기관은 본 기준에서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대상은 18세 미만 모든 아동임을 기억해야 하며 기관 직원들은 이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지역에 따라 관습과 상황이 매우 다양할지라도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의 기준은 문화적 혹은 상황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거나 희석되지 않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아동을 위험에 빠트리는 관행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기관은 지역의 상황에 맞게 기준을 적용하는 최선의 방법과, 소속 직원과 관계자들에게 어떠한 행동을 요구할 것인지, 그리고 아동에게 안전한 기관이라는 신뢰를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KCS 기준 이행의 이점

아동을 보호할 수 있다.

아동을 완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 수는 없지만 이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아동에게 해를 입히는 위험요소를 최소화 할 수는 있다.

기관 직원과 관계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모든 직원과 관계자들이 아동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아동이 위험에 처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된다.

기관과 기관의 평판을 보호할 수 있다.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기준의 적용을 통해 아동의 안전을 지키는데 헌신하는 기관이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할 수 있고, 이 영역에서의 모범적인 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기준

기준 1. 정책

기준 2. 인력

기준 3. 절차

기준 4. 책무성



기준 1 정책

기관은 아동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사건을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이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한다.

-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정책은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이 명시하는 아동이 학대와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에 기반한다.
- 본 정책은 기관차원에서 공식 승인되고 기관의 모든 직원과 관계자에게 적용된다.
- 본 정책은 적절한 방식으로 발간되고 광범위하게 촉진, 배포된다.
- 기관의 관리자는 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할 명확한 책임이 있다.



에티오피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작은 NGO는 취약한 아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NGO와 파트너십을 맺고자 한다. 이러한 경우 해당 기관은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를 위하여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입증해야 하고, 이것이 파트너십을 맺기 위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KCS 의 기준 1항과 지침은 NGO가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정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사항

아동보호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는 방법의 보다 자세한 정보는 *Developing a Child Safeguarding Policy and Procedures: A facilitator's guide*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준은 무엇을 말하는가?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정책을 하는 기관은 아동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예방하고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와 관련한 위배사안이 제기될 시 적절한 대응 기준을 제시하는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에 대한 정책을 명확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왜 이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가?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기관이 아동과 접촉하거나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기관 내 모든 사람들은 아동이 보호되어야 하고 위험에 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게 된다.

어떻게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가?

1. 정책 수립 기획하기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정책은 기관의 직원 및 관계자를 비롯하여 아동과 지역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효과적인 정책 수립이 기관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고, 기관의 다양한 부서에서 정책의 수립과 이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책 마련을 위한 실무그룹이나 TF를 구성하는 것이 좋다. 정책 수립을 기획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 기관 활동의 일환으로 아동과 접촉하거나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과 이에 내재된 위험요인을 이해한다.
- 기관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정책과 절차 가운데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와 관련된 내용 (예, 인력 채용 절차에서 선별하는 기준)이 있는지, 또한 어떠한 부분이 보완되어야 하는지 파악한다.
- 아동에 대한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해 정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정의하고, 이를 토대로 기관의 정책과 절차를 강화한다.
- 기관 내 주요 이해당사자들을 파악하고 누가 정책의 수립, 이행에 포함되어야 하고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 명확히 한다.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정책은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a. 기관의 철학을 담고 있어야 한다.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정책은 기관이 어떻게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지를 명시할 수 있어야 한다.

b. 모든 아동이 보호 받아야 할 대상임을 인식해야 한다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정책은 아동의 능력, 민족, 종교, 성별, 성적 취향과 관계없이 기관이 모든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책무를 명백하게 명시해야 한다. 또한 정책은 위험요소의 유형과 이를 다루는 방법이 아동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c. 모든 직원과 관계자들에게 항상 적용한다.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정책은 직원 및 관계자가 업무 중인 경우뿐 아니라 업무 중이 아닐 때에도 아동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직원과 관계자는 항상 자신들이 기관을 대표한다는 사실과 그들의 신원이 식별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d.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관리한다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정책은 기관이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담고 있어야 한다. 정책을 수립했다고 해서 아동에 대한 모든 위험이 제거된 것은 아니다. 이는 기관이 아동권리 침해 및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e. 기관의 모든 영역에 본 정책을 연계한다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정책은 아동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가장 중요한 약속이다. 본 정책은 기관 모든 분야의 정책과 절차와 관련 있어야 하며, 기관의 정책과 절차는 아동권리 침해 및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에 대한 기밀보고 체제를 포함하고 본 정책을 뒷받침 해야 한다.

2. 정책문서 작성하기

정책은 국제적, 지역적 맥락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관의 기존 정책과 연계되어야 한다.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정책은 직원과 관계자에 대한 행동 강령을 포함해야 한다. 모든 직원과 관계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고 아동을 포함한 관련 지역사회 주민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3. 정책 승인하기

본 정책은 기관의 경영진과 이사회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이는 기관차원에서 본 정책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의미로, 이를 완전히 이행하고, 모든 관련 사건에 적절히 대응하며, 아동, 직원 및 관계자가 이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더불어 본 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에 대한 영향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4. 정책 발간하기

본 정책은 모든 직원과 관계자, 파트너 기관, 아동, 지역주민들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한다:

- 회의실, 안내데스크 등의 공적인 장소에 기관의 약속을 나타내는 포스터 전시하기
- 기관의 인트라넷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기
- 모든 계약서와 서비스 협약서에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정책 문서 동봉하기
- 후원자/기부자 대상으로 기관 소개 시 본 정책에 명시된 후원자/기부자의 책임 설명하기

기준 부합여부 확인하기

다음의 문서들을 통해 기준 1(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정책 마련) 부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이사회가 승인한 정책 문서
- 현지 언어로 번역된 정책문서
- 파트너 기관, 아동,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정책을 홍보한 사례

정책 목차 예시

서문

서문에 정책에 대한 간략한 소개 및 본 정책이 개발된 이유, 적용대상 등을 간략히 설명해야 한다.

정책선언문/책임/가치

기관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의 안녕과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선언문을 만들어야 한다. 이 선언문은 기관 전체의 사명을 고려해 작성되어야 한다.

언급하고자 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아동보호, 아동학대의 문제 및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위기에 대한 기관의 정의와 이해를 명시한다.

본 정책을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이것은 정책의 핵심이며, 반드시 다음을 포함하고, 자세히 기술해야 한다:

- 위험 요소 파악/위험 경감
- 채용 시 스크리닝
- 행동규약/행동강령
- 교육/훈련
- 안전한 프로그램 기획
- 커뮤니케이션/가이드라인
- 관리 책임
- 조사/사건에 대응
- 이행과 검토



Do & Don't 기준 1

- Do 타 기관의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에 대한 정책을 참고하되, Don't 그대로 베끼지는 말라.
- Do 정책을 수립하고 알리기 위하여 관련 직원들과 협력하라.
- Do 함께 일하는 아동을 위해 아동 친화적 버전을 만들어 제공하라.
- Don't 책상 앞에서만 정책을 마련하지 말라 (실효성 없는, 문서 뿐인 정책을 경계하라).

기준 2 인력

기관은 직원과 관계자들에게 명확한 책임과 기대를 부여하고 그들이 방침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도록 도와야 한다.

- 주요 직원들을 직급별로(부장급을 포함하여) '아동 세이프가드 담당자'로 임명하고 그들에게 명확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한다.
- 성인 및 또래 아동이 아동에게 취해야 할 적절한 행동과 취해서는 안될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 파트너, 지역사회, 아동과의 관계에 있어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신입 직원은 업무를 시작할 때 기관이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와 관련하여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 그들은 기관이 규정한 학대의 정의가 담긴 정책을 숙지하면 기관에서 정의한 학대가 국제적인 정의라고 이해한다. 그러나 직원이 일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체벌이 허용되고 학생을 훈육하는 데 쓰이고 있다.

KCS의 기준 2는 모든 직원들이 학대의 정의를 이해하고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와 관련하여 기관이 기대하는 바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도록 한다.



참고사항

이 기준은 무엇을 말하는가?

기관과 관련된 모든 사람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태도, 기술, 지식을 개발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배움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사업수행 파트너를 포함하여, 후원 협력 파트너, 기관 운영에 협력하는 파트너 등 모든 파트너들도 기관의 정책에 부합하는 자체의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아동과 아동의 가족들도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에 대한 기관의 책임을 이해하고 관련해서 위배사안이 제기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알고 있어야 한다.

왜 이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가?

아동과 접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동을 보호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아동권리 침해 및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슈를 파악하고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와 관련한 기본적인 이해와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기관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아동에게 위험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의무를 지니는지, 위험이 일어날 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 등을 이해시켜야 한다.

어떻게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가?

1.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에 대한 역할과 책임 지정하기

모든 기관은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방안이 기관 전체에 연계되도록 이를 관리 감독할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담당자는 기관의 특성과 구조를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선임급이어야 하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직차원의 충분한 지원과 자원이 있어야 한다. 각 직급 및 부서마다 아동 세이프가드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람들이 담당자에게 찾아가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사안에 대해 논의 할 수 있어야 한다. 기관 내 아동 세이프가드 담당자가 명확히 지정되어 있고 직원 모두가 담당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은 모범적인 실행사례이다.

규모가 큰 기관에서는 각 지역별 그리고 활동 영역 전반에 걸쳐 지정된 담당자가 있는 구조를 마련한다.

기관의 필요에 따라 위의 사항에 추가적인 구조나 역할을 더할 수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아동보호 담당자는 기관의 사업 총괄 책임자여서는 안되며, 한 사람이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관리에 모든 책임을 가져서도 안 된다. 여러 보고체계와 책임자들을 갖추어 단일 보고체계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또한 담당자가 부재중일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역할은 복수의 사람들이 대체하여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 이행에 대한 관리자의 책임

책임

조치

모든 국가, 부서, 대륙 및 국가 사무소의 최고 책임자와 고위 관리자	1. 모든 신입 직원은 고용계약을 맺기에 앞서, 혹은 그와 동시에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정책과 행동강령을 각 한 부씩 받아야 한다. 신입직원은 정책을 이해하고 준수할 것에 동의한다는 의미에서 동의서를 읽고 서명하여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서명을 받은 동의서는 인사기록으로 보관되어야 한다.
모든 국가, 부서, 대륙 및 국가 사무소의 최고 책임자와 고위 관리자	2. 신입 직원 대상 오리엔테이션 과정에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정책 교육을 포함시켜 모든 신입 직원이 해당 교육을 받도록 하고, 모든 직원은 업무 연관성에 따라 본 교육을 적절하게 받도록 해야 한다.
이사회, 모든 국가, 부서, 대륙 및 국가 최고 책임자와 고위 관리자	3. 기관의 모든 관계자들은 그들의 책임(관할) 지역에 따라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정책과 해당지역 법적 절차를 준수할 것에 동의하는 서명을 해야 한다. 또한 기관의 모든 관계자들은 기관의 행동강령이나, 아동에 대한 적절한 행동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서명해야 한다.
모든 국가, 대륙 및 국가 최고 책임자와 관리자	4. 각국 사무소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응할 수 있는 현지의 법적 절차가 국제적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현지의 법적 절차는 해당 지역 법에 따라서 현지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국제적 기준과 지역차원 간 절차상 편차가 있을 시 이는 관련 해당 대륙 혹은 국가 사무소 책임자로부터 사전에 공식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지 절차는 현지 언어로 번역되어야 하며 아동친화적 형태로 (아동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마련되어야 한다.
관리자	5. 아동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정책 동의서에 서명하고 기관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방문자들이 방문기간 동안 아동과의 모든 접촉 및 의사소통에 있어 본 정책을 준수해야 함을 인지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관리자	6. 기관과 함께 일하는 아동과 그 가족이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정책과 현지 절차를 인지하도록 하여, 직원, 관계자, 방문자들이 취해야 할 적절한 행동과 아동보호 사건 발생시 누구에게 신고(보고)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한다.
관리자	7. 본 정책 이행을 위한 보호조치가 해당 책임 범위에 충분히 내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리자	8.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와 관련한 이슈를 보고하거나 또는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사람은 신고를 했다는 이유 또는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안전을 위협받거나 잠재적 보복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을 포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양상에 대하여 이들이 적절한 보살핌과 지원 및 보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직원 및 관계자의 채용과 계약

기관은 반드시 채용 공고, 면접, 고용계약 과정의 초기 단계에서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에 대한 직원의 책무를 설명해야 한다.

직원, 자문위원, 자원봉사자 채용 시, 기관이 요구하는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정책과 관련된 역할과 책임이 직무기술서에 명확히 기술되어야 한다.

모든 면접 시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내용을 포함해야 하고 지원자가 이와 관련한 기관의 책임을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업무 상 직접적으로 아동과 접촉하거나 아동의 정보에 접근해야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신원 확인과 범죄 기록조회를 거쳐야 함을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채용 및 선발에 대한 체크리스트

1. 직무기술서 작성 시, 해당 직무의 역할을 분석하고 해당 직무와 관련한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이슈와 잠재된 위험요인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아동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직무인가?

피고용인이 관리감독 없이도 아동을 접촉해도 괜찮으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 밖에 아동과의 접촉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예. 이메일, 전화, 편지, 인터넷)

2. 단기 계약직, 자문위원을 포함하여 모든 직책/직무에 대한 명확한 직무기술서와 권한 및 역할을 명시한 문서를 마련해야 한다.
3. 아동과 직접적으로 일하는 직무일 경우, 선발 기준에 관련 경력이 있는지를 포함해야 한다.
4. 채용후보자에게 보내는 우편물에 아동보호 책임에 대한 자세한 기술서를 함께 보내야 한다.
5. 과거에 유죄로 판결된 혹은 계류 중인 징계 절차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한 사전 동의를 구하는 신청서 양식을 마련해야 한다.
6. 신원을 확인하고 관련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해야 한다.
7. 면접 절차를 잘 구성하고 면접관이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및 이와 관련한 모범사례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8. 면접 시 아동보호에 대한 지원자의 태도와 가치관을 확인할 수 있는 특정 질문을 포함해야 한다. 아동 보호와 관련한 경험이 있는지, 경험을 통해 배운 점은 무엇인지, 그것이 현재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에 대한 예를 들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9. 아동과 함께 일한 지원자의 경험과 관련 적합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전 직장상사 포함) 들로부터 총 세 개의 추천서를 받는다.
10. 추천인의 신원을 확인한다.

11. 가능한 한 많은 신원조사를 실시한다.

12. 지원자의 직무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습기간을 두는 것을 고려한다.

Nolan, P (2004) The role of HR in Child Protection, People in Aid 인용

3. 직원 행동강령

행동강령은 기관에 고용되거나 연관되었을 때 무엇이 적합하고 적합하지 않은 행동/관행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가 된다. 행동강령은 아동에 대한 적절한 행동과 부적절한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어야 한다.

모든 직원과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관계자는 고용계약 시 또는 업무 시작 시 행동 강령에 동의해야 한다. 이는 기관의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정책의 필수 요소이고, 적절하게 이행될 경우, 아동 학대 발생의 위험요소를 줄일 수 있다. 또한 행동강령을 위반했을 때 기관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야 한다.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정책과 행동강령을 갖춘 기관에서 일하는 직원은 기관 내에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 이는 직원들이 근무지에서뿐 아니라 근무지를 벗어나서도 적절한 행동을 해야 하며 위배 사항이 발생했을 시 보고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때로 직원들에게 어려움이 될 수 있지만, 직원들은 기관이 모든 아동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4. 훈련과 교육

교육과 훈련은 이행을 증진시키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기관에 고용되거나 계약된 모든 사람은 신입교육/오리엔테이션 단계에서부터 그들의 역할과 책임에 따라 적합한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와 관련한 정규 교육에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5. 자문과 지원

아동 세이프가드 담당자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위배사안이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곳에서 자문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아동과 그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가능한 자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6. 파트너 기관과의 협약

기관은 후원자, 지역 NGO, 정부, 계약자, 공급자 등과 다양한 파트너십을 맺게 되는데, 모든 협력자들 역시 아동보호에 대한 책무에 동의해야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파트너기관은 그들이 맺고 있는 협력관계의 성격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 협력기간 동안 파트너기관과 아동의 접점이 있는지, 아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것이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협약내용에 어떠한 함의가 있는지 등을 철저히 평가해야 한다.
- 기관과 파트너간 자원의 제공 및 교환을 포함하여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와 관련한 규정의 준수와 역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협약에 포함되어야 한다.

- 파트너십 협약에는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와 위배를 보고하고 이에 대응해야 할 의무가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파트너 상호간 보고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위배사안이 보고 및 확인될 경우, 협약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 위배사안의 제기만으로는 협약을 파기하지 않아야 하며, 파트너(기관)가 사안에 대해 적절히 조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약을 파기한다.

7. 아동 및 가족과의 파트너십

기관은 가족 혹은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의 이행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정책과 그 절차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관과 파트너 기관은 다음 사항을 실천해야 한다:

- 부모, 아동, 그 밖에 관련된 사람들이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에 대한 책임과 방안에 대해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기관과 부모/양육자/지역사회 지도자 간의 의사소통은 언어 및 소통 방식의 차이를 고려하여 이뤄져야 한다.
- 아동, 가족, 지역사회와 함께 불만 사항에 대한 대응절차를 고안하고, 이를 잘 홍보하여 모두가 해당 절차를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기관이 아동과 직접적으로 함께 일한다면 다음사항을 따라야 한다:

- 가능하다면 부모/양육자/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라. 예를 들어, 이들을 일상의 활동뿐만 아니라 운영위원회나 기획단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 각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에서 아동보호 책임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책임자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직원은 특정 티셔츠를 입거나 배지를 착용해서 쉽게 식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아동의 참여 활동에 대한 아동의 부모 또는 주 양육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직원과 아동을 위한 행동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 아동과 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따돌림 방지 가이드라인 만들기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 부모/보호자/지역주민들에게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와 관련하여, 기관이 잘하고 있는 점은 무엇인지, 잘 못하고 부분은 무엇인지, 주민들이 기관과 기관의 운영방식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한다.
- 아동이 무엇으로부터 안전함 혹은 불안함을 느끼는지를 논의하고, 아동 자신 혹은 친구들이 안전에 위협을 느낄 때 어떻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지 아동들과 함께 의논하여 결정한다.
- 기관의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방안에 아동의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아동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기준 부합여부 확인하기

-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에 대한 교육 계획, 교육 출석 기록, 교육 평가
- 아동이 받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한 정보가 담긴 아동을 위한 안내문
- 정보와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연락처
- 파트너십 협약, 재정 지원서, 보고서 양식
- 행동강령
- 성인과 아동, (또래)아동 간의 행동 가이드라인
- 직원, 파트너, 아동, 지역사회를 위한 보고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



Do & Don't 기준 2

- **Do** 모든 사람이 잠재적 위험요소, 기관의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정책, 정책 달성을 위한 의무사항 등을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
- **Do**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방안을 통해 기관이 무엇을 성취하고자 하는지를 파트너, 아동, 가족들과 개방적으로 논의함으로써 이행과정에서 어떤 도전과제들이 있을 수 있는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를 발견한다.
- **Don't** 아동과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동에게 안전한 사람이라거나 혹은 아동에게 해를 가하지 않을 거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기준 3 절차

기관은 기관 전체에 적용되는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절차를 이행하여 아동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든다.

- 기관은 법, 사회복지, 아동보호 방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역조사(local mapping)를 수행한다.
- 모든 단계에서의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대한 위험 평가와 완화 전략을 기존 위험 평가 절차의 모든 단계에 포함시킨다.
-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방안을 기존의 절차와 체계(전략수립, 예산편성, 채용, 사업주기관리, 성과관리, 조달, 파트너 협약, 운영 체계 등)에 연계시킨다.
- 아동학대사건과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위배에 대한 보고와 대응 절차는 지역상황에 적합하도록 개발한다.



한 신규직원이 방글라데시의 초등학교에 새로운 위생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프로그램 디자인을 검토 중이다. 아동에 대한 위험요소에 유념하여 검토한 결과 화장실이 남녀공용으로 설계되었음을 발견했다. 이를 반영하여 본 계획은 남녀 학생이 분리된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변경된다.

KCS의 기준 3은 모든 프로젝트 관리자가 프로젝트를 계획할 때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이슈를 고려하여, 아동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다.



참고사항

이 기준은 무엇을 말하는가?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정책에의 책무는 기준에 마련된 기관의 절차와 체계 및 필요한 경우에 새롭게 도입된 절차와 연계되어야 한다. 절차는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수행되어야 하는 각 단계를 상세히 설명한다.

왜 이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가?

모든 아동에 대한 보호 책무를 공표하는 것만으로는 기관 내에 필요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없다. 기관이 아동에게 안전한 기관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방안을 기관의 체계, 절차, 운영 전반에 연계해야 한다.

이 기준은 기관이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요건들을 연계하는 데 필요한 단계를 밟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며 지역적으로도 적절한 조치를 확실히 취하도록 돕는다.

어떻게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가?

국제적 차원에서 생각하고, 지역적 차원에서 실천하라 - 지역 맥락에 맞는 조치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방안은 서로 다른 국가 및 지역 맥락에 맞게 기관의 체계와 절차에 연계시켜야 한다. 이러한 방안은 지역 맥락에 맞게 적용해야 하지만 국제 및 대륙차원의 기준에도 부합해야 한다.

“아동”과 “아동학대”의 정의는 국가 및 문화적 이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기관은 ‘아동’은 18세 미만의 모두로 정의하고 “학대”는 아동에게 해를 끼치는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인 행동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안 발생 시 이슈와 대응방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관 전반에 걸쳐 직원들 간 협의과정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방안은 지역문화에 민감해야 하지만 누가 아동인지와 무엇을 학대로 여길 것인지는 국제 및 대륙 차원의 기준과 틀에 따라 명확히 설정하고, 이는 이사회 전반에 걸쳐 적용되어야 한다.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기관의 체계와 절차는 각 사무소, 대륙,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와 관련 있는 곳에 연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맥락 및 개발된 전략에 대한 위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기관은 사안이 제기될 시 지역적 차원의 대응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필요 시 지원이 가능한 지역 차원의 서비스, 사안을 보고 받아야 하는 지역 당국, 해당 지역에서 일하는 타 기관 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지역 정보와 자원에 관한 체크리스트

법적 자원

- 아동보호를 위해 법이 명시하는 권한을 가진 지역 정부부처와 기관의 세부정보
- 아동의 복지/안전/보호에 대한 법안 요약
- 국가가 승인하거나 비준한 국제 협약(예: 유엔아동권리협약)
- 알려진 한도 내에서 법안의 이행/시행의 간략한 분석
- 아동대상 폭행사건 수사에 대한 지역 경찰의 입장과 관련 범죄의 기소 가능성
- 국가나 관련 법안에서의 법적 동의 연령

기타 기관: 보건서비스, NGOs, 기관 간 포럼

- 피해자에 대한 조치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 및 그 외 서비스에 대한 세부정보
-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이슈를 다루는 지역의 공동협의체, HIV 및 여성보호 센터/시설, 은신처 등을 포함하여 관련 NGO, 기타 기관,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네트워크 등에 대한 세부정보
- 아동권리를 연구하는 학술기관과의 관계 형성
- 아동보호/권리 또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원조 프로그램을 위해 지역 기반으로 일하는 NGO/INGO 및 기타 기관들을 식별하고 관계를 형성

지역사회

- 아동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지역적 관행의 종류에 대한 정보
- 조혼, 성년식, 여성할례와 같은 유해한 관습의 식별 및 문서화
- 비공식적이거나 지역사회에 기반한 아동보호 및 사법 체계와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
- 지역 내 애드보커시 그룹, 지역사회 및 종교 집단, 또는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조직화된 아동활동 등과 같은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정보 수집

위험요소 평가와 위험요소 완화

위험요소와 이를 방지하는 것은 오늘날 많은 기관의 활동전략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더 많은 위험요소를 인지할수록, 보다 효과적으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7단계 위험요소 평가:

- 기관의 맥락, 범위, 환경 규명
- 아동에 대한 기관의 잠재적 영향력 또는 아동과의 관계 식별
- 기관이 아동과 접촉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의 잠재적 위험 확인 및 분석
- 위험의 발생가능성과 아동에게 미칠 영향의 심각성 평가
- 위험을 최소화하고 방지하기 위한 전략 이행
- 위험과 예방조치 검토 및 수정
- 의사소통 및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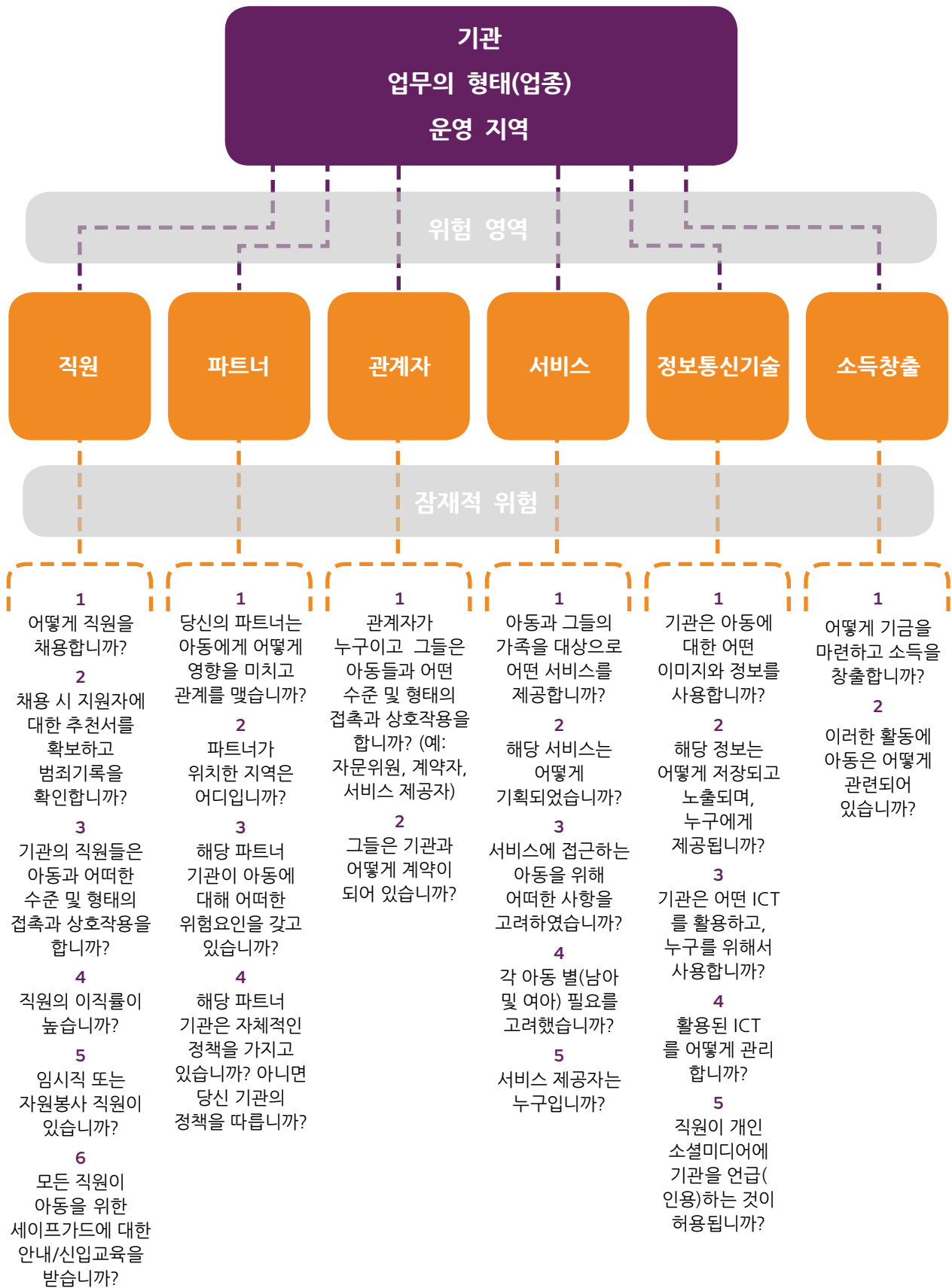
맥락, 범위, 환경: 관련 질문

- 당신의 기관은 아동학대가 만연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 당신의 기관은 아동학대 사건 대응을 위한 법과 당국의 기능이 취약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아동에게 주는 영향 또는 관계: 관련 질문

- 당신의 기관은 아동과 함께 일합니까?
- 당신의 기관은 지역사회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칩니까?
- 당신 기관의 직원 및 관계자들은 아동과 직접 접촉합니까?

위험요소의 식별/평가



위험요소를 방지/최소화하기 위한 전략 이행하기

기관이 업무와 일터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문화를 장려하고, 아동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해 밟아야 할 여러 단계가 있다. 아동에 대한 위험을 파악하고 경감하기 위해서는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방안을 기관 전체에 연계할 때 다음의 영역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기관 문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관의 문화가 변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가 기관차원에서 중요하게 여겨지고,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위배 및 아동학대 사건을 대응하는 방법이 공개되고 투명해질 수 있다. 기관 문화는 운영방식, 리더십 스타일, 사업 핵심분야를 비롯하여 일부 경우에는 기관의 소재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 **역할과 책임:**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와 관련한 특정한 역할과 책임을 직원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기존의 역할과 책임에 변화가 필요하며, 새로운 역할을 제시해야 한다. (기준 2항 참조).
- **정책과 절차:** 직원채용과 선발, 정책과 절차, 직원 행동강령을 포함하여 기존의 정책과 절차는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와 연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문제 제기를 한 직원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절차와 내부신고 정책을 제시 할 필요가 있다.
- **체계와 과정:** 위험요소 평가, 품질확인 체계,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기획과 이행 과정, 분기 또는 연간 보고 절차와 같은 기존의 체계와 절차를 적용해야 할 수 도 있다. 아동에 대한 위험이 의심되거나 실제로 발생했을 때 이를 보고하기 위해 새로운 절차를 개발해야 할 경우도 있다.
- **역량 강화:** 직원과 관계자에게 아동보호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대해 설명하고 교육함으로써 역량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이는 기관에 적합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기준 2항은 직원과 관계자 역량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다음은 위험평가의 예시이다.

위험의 단계별 정의

높음: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고 아동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침
중간:	발생할 확률이 높거나 아동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침
낮음:	발생할 확률이 낮고 아동에게 영향을 적게 미침

위험요소 영역	위험 인자	위험 단계	위험 완화 전략	이행 행동
상황, 범위, 환경	아동학대가 만연한 지역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	중간	체제와 과정(프로그램이 수행되는 지역에 대한 배경조사를 추가하여 현재절차를 수정)	프로그램 지역의 아동학대의 성격과 범위에 대한 연구 수행
	기관이 해당지역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평가를 실행하지 않음	높음	체제와 과정(안전을 고려하기 위해 현재 프로젝트 사이클을 수정)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위한 상황분석 시 안전의 이슈를 연계하고 안전을 고려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기획
	이동과의 접촉	이동과의 접촉의 수준이 높고 단 한 명의 직원만이 아동을 접촉하는 빈도가 높음	역할과 책임(기존 역할의 변화나 새로운 직원을 투입)	정기적으로 아동과 만나는 직원을 추가로 배치
직원	아동과 지역사회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방법이 없음	중간	기관의 문화(열린 문화 촉진)	프로젝트 직원의 역할에 피드백을 받을 책임을 포함
	직원 채용을 비공식적으로 진행하며, 추천인 확인 절차 없음	높음	역할과 책임(기존 역할의 변화, 업무량에 더 많은 시간 부과)	
	정책과 절차가 문서화 되지 않았거나 이행되지 않아 직원이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에 대한 책임을 이해하지 못함	높음	정책과 절차(기존 정책/절차의 변화)	채용 정책과 절차 개정, 추천서 확인
	정책과 절차가 문서화 되지 않았거나 이행되지 않아 직원이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에 대한 책임을 이해하지 못함	높음	역량 강화	인사부/관리부를 훈련시키고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의 핵심적인 책임을 부과
	정책과 절차가 문서화 되지 않았거나 이행되지 않아 직원이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에 대한 책임을 이해하지 못함	높음	역할과 책임(기존 역할의 변화 또는 새로운 역할의 추가)	
	신입/직원교육의 부족으로 직원이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훈련 받거나 자문을 받지 못함	높음	정책과 절차	정책의 문서화 이행계획 개발
	신입/직원교육의 부족으로 직원이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훈련 받거나 자문을 받지 못함	높음	역량강화 문화전력	직원을 위한 역량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위험요소 영역	위험 인자	위험 단계	위험 완화 전략	이행 행동
파트너	파트너십 협약서 부재	높음	체계와 과정(현재 파트너십 협약서로 대체)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방안을 포함한 파트너십 협약내용 도입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이슈를 제외하고 재정 분야에 대해서만 파트너 위험평가를 실행함	높음	상동	상동
	파트너가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자원이 없는 소규모 기관임	중간	상동	파트너십 협약서에서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기금을 포함
관계자	기관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개인 후원자의 후원을 받음	중간	체계와 과정(현재 후원자 관리 체계로 대체)	후원자 관리를 위한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방안을 소개 향상 후원자의 아동방문을 감독
서비스	적절하게 관리되거나 감독되지 않은 아동과의 활동	높음	정책과 절차(추가 절차)	아동을 감독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및 이행
	지역사회로부터 떨어진 고립된 지역의 프로젝트	중간	체계와 과정(프로젝트 주기에서 이행 단계로 변화)	아동과 지역사회와 함께 대안적 프로젝트 지역을 선정
ICT	ICT 정책 부재, 사무실 컴퓨터는 드물게 체크됨	중간	정책과 절차	ICT 정책 개발
			체계와 절차	사무실 컴퓨터와 노트북의 활용을 정기적으로 검사
소득 창출	이미지나 이야기를 사용함에 있어 동의를 구하지 않음	중간	정책과 절차	홍보/모금 시 적용 가능한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내용을 도입
			체계와 과정	아동의 이야기 및 이미지 사용 시 동의를 구하는 체제를 도입

자체감사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방안이 기관 전반에 얼마나 잘 연계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자체 감사 툴을 사용할 수 있다. 이 툴은 당신 기관의 개선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의 이행과 모니터링 각 단계에서 사용될 수 있다.

KCS 자체감사 도구

이 자체감사 도구는 기관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이상적인 방법이다.

이것은 George Varnava가 지난 NBC(National Children's Bureau) '아동과 폭력 포럼(Forum on Children and Violence)'에서 했던 작업에 기초한다. Varnava의 허락을 받아, NSPCC가 이를 감사 도구로 채택했고, KCS가 KCS의 기준에 이를 연계시켰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여러분의 기관이 어디에 속하는지 체크하라. 각 기준은 아래와 같다:

A. 적용됨 B. 진행 중 C. 미적용

적절하게 A, B, C 상자에 표시하라.

기준 1: 정책	A	B	C
기관은 모든 직원과 (파트너를 포함한) 관계자가 지켜야 할, 관련 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은 문서화된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정책이 있다.	☐	☐	☐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그 밖에 아동과 관련한 협약과 가이드라인이 기관의 정책에 반영되어 있다.	☐	☐	☐
정책은 명확하고 쉽게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문서화되고, 발간되고, 아동을 포함한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에게 홍보되고, 배포된다.	☐	☐	☐
정책은 모든 아동이 보호를 받기 위한 동등한 권리가 있으며, 일부 아동의 경우 그들의 민족성, 성별, 나이, 종교 또는 장애, 성적 기호 등 때문에 도움을 받는 데에 특별한 어려움과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	☐	☐
정책은 직원, 관계자, 그 밖의 사람들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유해한 관행, 아동에게 위험한 운영활동 또는 아동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잘못된 사업의 기획 및 실행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	☐	☐
기관은 아동보호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고위 간부(CEO와 책임자)와 관리자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	☐	☐

기준 2: 인력	A	B	C
아동에게 또한 아동이 다른 아동에게 기대하는/적절한 행동기준을 안내하는 문서화된 행동 가이드라인(행동 강령)이 있다.	☐	☐	☐
직원, 자원봉사자, 관계자 등 기관의 모든 구성원은 기관이 수립한 정책과 절차에 대해 안내 받고, 아동학대를 인식하고 아동학대 사건에 대응하는 방법을 포함한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교육을 받는다.	☐	☐	☐
기관은 개방적이며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이슈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이슈를 쉽게 식별하고, 문제제기하며, 토론했다. 직원, 파트너, 관계자는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위배나 아동학대 사건이 제기되는 곳에서 적절한 자문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직원들은 아동과 그의 가족들에게 지원 가능한 자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	☐
아동은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아동, 그들의 부모/양육자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자문과 지원을 제공받는다.	☐	☐	☐
기관은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에 대한 지지를 얻고 소통하기 위해, 그리고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정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각 직급별(책임자 직급을 포함하여)로 명확한 책임을 명시하고 담당자를 지정한다.	☐	☐	☐
파트너 기관은 해당 기관에 적절한 최소한의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한 지원을 받는다.	☐	☐	☐

기준 3: 절차	A	B	C
기관은 일하고 있는 곳의 법, 사회복지와 아동보호 체계를 분석하기 위해 지역조사를 요청한다.	☐	☐	☐
지역의 체계에 맞게 (조사에서 식별된 바와 같이) 아동학대 사건을 다룰 수 있는 적절한 보고 및 대응 절차가 있다.	☐	☐	☐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와 관련한 위험요소의 식별과 완화는 모든 단계의 위험평가 과정으로 연계한다. 예시) 기관의 위험 식별부터 아동 참여 또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의 계획을 포함.	☐	☐	☐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방안 마련과 이행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인적, 재정적 자원 동원이 가능하다	☐	☐	☐
기관의 징계 정책 및 절차와 연계하여 아동학대 사건을 안전하게 보고하는 방법에 대해 단계별 지침을 제공하는 명확한 절차가 시행되고 있다.	☐	☐	☐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정책은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 기관 내 모든 운영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기존의 사업 절차와 체계(전략수립, 예산편성, 채용, PCM(사업수행관리 및 절차), 성과관리, 조달 등)에 연계되고 활발하게 관리된다.	☐	☐	☐

기준 4: 책무성	A	B	C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관련 이슈, 및 절차의 준수 및 이행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특정 조치 또는 품질보증, 위험관리, 감사, 모니터링과 같은 기존 체계와의 연계를 통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	☐	☐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관련 이슈, 아동보호 사례를 포함한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의 진척과 성과를 추적하기 위하여 책임자 직급을 포함한 핵심 관리자 그룹(key management forum)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	☐	☐
이사회, 감시위원회와 같은 외부 또는 독립 조직은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와 관련된 영역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고위 간부가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에 관한 책임을 촉구(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	☐
기관의 발전을 위한 실제사례로부터의 배움의 기회가 있다.	☐	☐	☐
정책과 실행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정기적으로 검토되며 공식적으로 3년마다 평가된다.	☐	☐	☐
주요 이해당사자(관련된 핵심 관리자 그룹, 외부 또는 독립 조직)에게 진척, 성과, 교훈(lesson learned)을 보고하고, 기관의 연례 보고서에 포함한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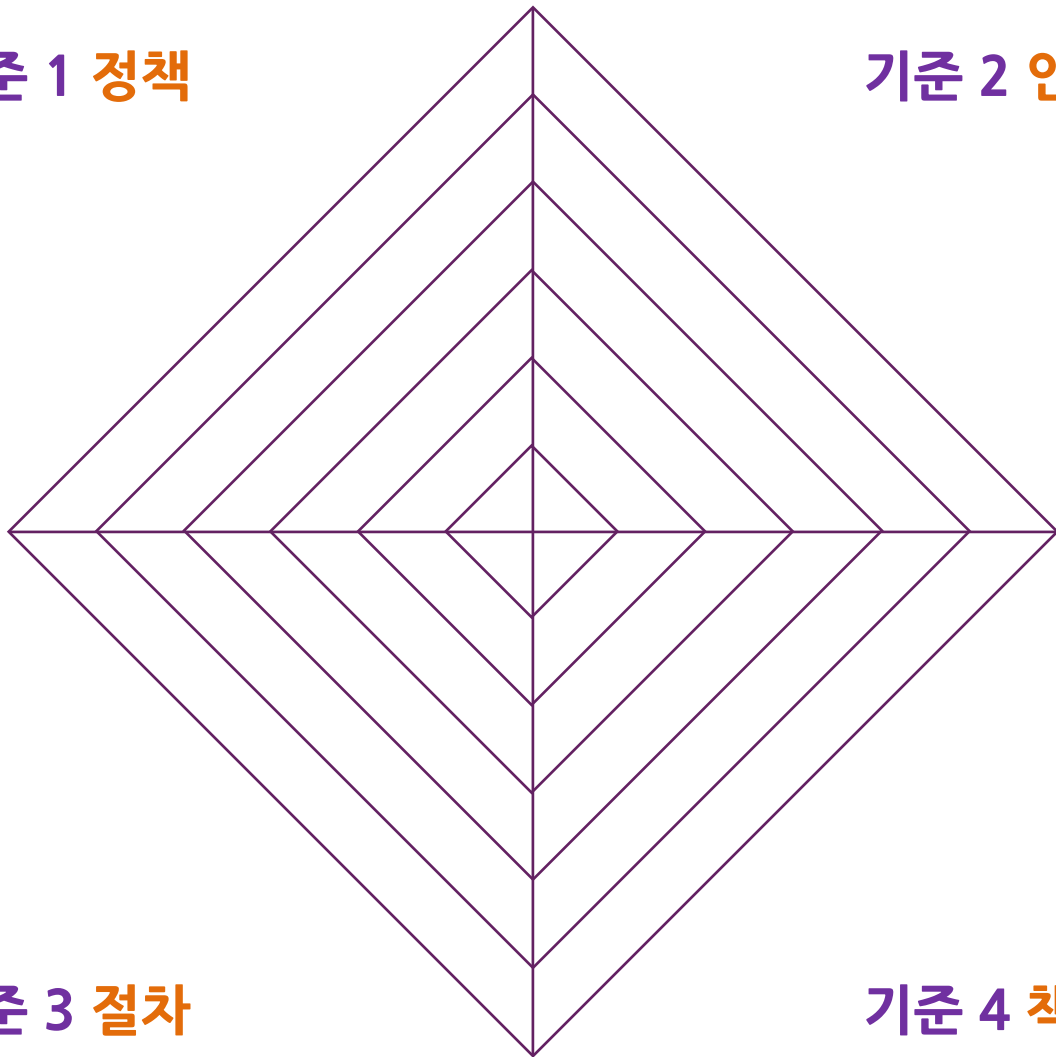
자체감사 망(web)

자체 감사를 마친 후, 다양한 색깔의 펜이나 세 가지 명암을 사용하여 아래 감사망(web)에 응답한 내용을 옮겨본다. 자체 감사망은 기관이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를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는지와 어떠한 점이 보완되어야 하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이 된다. A, B, C에 각기 다른 색깔 또는 명암을 사용하라.

아래 감사망은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와 관련해 기관이 도달한 단계와 추가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이 활동의 목표는 보완할 점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1부터 6까지의 단계별 계층적 진전을 의도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기준 1 정책

기준 2 인력



A. 적용

B. 진행 중

C. 미적용

보고 절차

모든 직원과 관계자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해당 사안을 보고할 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 보고절차는 모두가 아동과 증인 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첫 번째 단계는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위배가 기관내부에서 발생한 것인지 외부 상황과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에 대한 우려사항을 당신이 알게 되었다. - ACT

문제가 있다면 행동하라. 의심스럽다면, 목소리를 내라!

아동 중심이어야 한다.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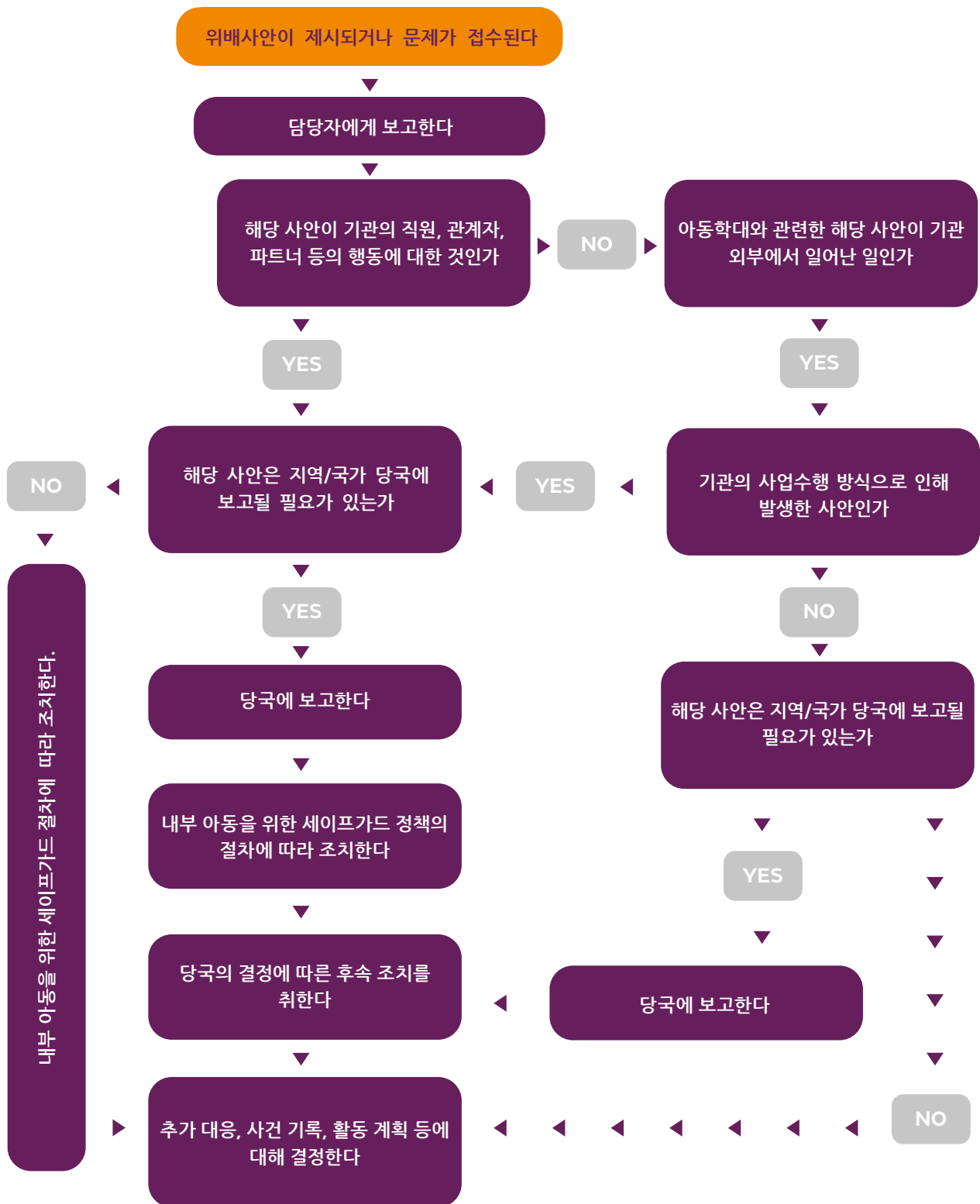
시간이 중요하다.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이슈에 대해 적시에, 효과적으로, 비밀리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Plan International 의 Child Protection Policy Reporting and Responding to Child Protection Issues in Plan 에서 발췌

지역의 모든 보고절차가 마련되고 이에 대한 지역사회와 현장 직원들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만약 지역사회나 현장 직원이 보고체계를 편안하게 느끼지 못하거나 확신하지 못한다면 이들은 이 보고 체계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직원, 아동, 지역사회 주민들이 아동학대 사건을 보고할 때에 직면할 수 있는 다른 장애물과 함께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적절한 절차도 고려하라.

기본원칙은 아동의 안전이 언제나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는 것이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모든 혐의 및 위배사안은 심각하게 다뤄져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위배사안을 제시하는 누구나 엄격하게 보고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필수적이다. 보고체계상 적합한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비밀을 유지하는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음은 기관에 적용될 수 있는 보고 절차의 예시이다.



기관의 보고절차는 아동과 지역사회에 의해 이루어지는 신고도 포함해야 한다. 기관의 내부절차와 연계하여 불편사항을 보고할 수 있는 합의된 체계가 필요하다. 다음은 아동과 지역사회가 위배사안과 사건을 신고하기 위해 사용한 체계의 사례이다

- 아동과 주민들의 신뢰를 받으며 주민들이 신고를 원할 때 찾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아동 세이프가드 담당자를 지정한다. 담당자는 아동학대 발생이 의심되는 지역사회를 방문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 신고접수함을 활용한다. 신고접수함은 아동과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비밀보장이 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신고 접수방식을 익명으로 운영할 경우 신고 내용이 세부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후속조치를 취하기 어렵고 아동이 추가적인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콜센터를 운영한다. 콜센터 서비스 기관과 협력하여 당신의 기관이 일하고 있는 곳에서 아동과 지역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콜센터 서비스 기관과 협력할 경우 우선으로 접수되는 신고사항 중 기관과 관련된 사안은 당국뿐만 아니라 기관에도 보고할 것에 합의해야 한다.
- 지역 내 아동보호 전문기관 및 관련 정부당국의 지원이 전제된다면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아동보호 체제(CBCPM: Community-based child protection mechanisms)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아동보호 체제의 역할은 당신의 기관이 연루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직접 신고뿐 아니라, 사건 발생시 기관을 통해 정부당국에 사건을 보고하는 것까지 확대될 수 있다.

기존 부합여부 확인하기

- 위험 평가 및 완화 전략이 기록된 위험요소 기록부
- 지역조사로부터 얻은 정보
- 정부와 파트너들을 위한 상세 보고 절차 도식



Do & Don't 기준 3

- **Do** '관할 지역'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통제 범위 안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을 완화해야 한다.
- **Don't** 발생 가능한 모든 아동학대 사안을 예방할 수 있다고 과신해서는 안 된다; 아동학대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예방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 **Do**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전략을 채택하라.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 **Do** 우리 기관의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조치와 부합하는 기관들과 협력하라. 단독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말라.
- **Do** 모든 과정에서 아동이 적절한 지원을 받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준 4 책무성

기관은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방안을 모니터링하고 검토한다.

-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정책과 절차의 이행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 주요 이해당사자(기관 경영진, 관련된 외부 또는 독립된 조직)에게 정책 이행의 성과, 실적, 교훈 등을 보고하고 해당 내용을 기관의 연례 보고서에 포함 시킨다.
- 실제 사례로부터의 교훈은 기존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방안 검토와 개정에 유용한 정보가 된다.
- 정책과 이행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3년마다 외부평가/감사자가 공식적으로 평가한다.



당신이 속한 기관은 대형 프로젝트를 위한 기금 공모에 착수하였다. 그런데 공여자가 기관에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기준을 마련하고, 가장 최근의 내부 감사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한다.

당신의 기관은 내부감사를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당신은 최근까지 기관에 보고된 많은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위배사항을 알고 있다.

KCS의 기준 4는 적절한 증거를 제공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참고사항

이 기준은 무엇을 말하는가?

기관에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모니터링 및 검토 방법과 체제를 마련하고,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방안에 대한 조직의 책무성을 상향식과 하향식 모든 방향에서 강화한다.

왜 이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가?

조직 내 여타의 기능들과 마찬가지로,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방안들과 노력이 성공적인지 확인하고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이행을 측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 우리의 현 상태는 어떠한가?
-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되길 원하는가?
- 둘의 차이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적극적 모니터링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기준이 이행되고 있고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다. 직원과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기준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얼마나 효과적인지, 그리고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등을 설문조사와 같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동적 모니터링은 문제가 발생하기 직전이나 문제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는 것을 말한다. 사건 발생 후 적절한 사례관리를 통해 학대가 발생한 원인과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관이 취했어야 할 조치, 향후 예방하는 방법 등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어떻게 기준을 부합할 수 있는가?

만약 기관의 체계 및 절차와 연계된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가 있다면, 기관의 정기 성과보고 시 이러한 방안들이 적절하게 이행되었는지의 여부도 비교적 직접적으로 보고될 것이다. 보고내용에는 사건 발생 횟수나 사건 대응 방법만을 다루어서는 안 된다.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관의 체계와 절차가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포함되어야 하며, 기관의 위험접수부서가 좋은 시작점이 될 것이다. 기관은 직원 혹은 주민들에 의해 보고 받은 아동학대 의심 혹은 실제발생 사건들보다 실제로 발생한 횟수가 더 많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보고되는 사건이 적다는 것은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다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에 대한 정책과 절차가 잘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할 가능성이 크다.

파트너 기관 간에 이뤄지는 보고내용에는 어떻게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방안이 이행되었는지, 해당 방안이 각 기관에서 효과적이었는지를 포함되어야 한다.

모든 기관은 내부 감사를 받아야 한다.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가 기관의 체계와 절차에 연계되었다면 사업의 다른 영역과 더불어 감사를 받아야 한다. KCS의 인증제도(certification scheme) 1단계는 아동에게 안전한 기관으로서의 진척도를 점검하기 위하여 기관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체감사 방법이다.

외부 인증을 통해서도 기관 내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방안이 잘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KCS의 인증제도 2단계는 당신이 속한 기관의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방안의 효과성 여부에 대한 외부 인증을 제공 한다.

기관의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방안에 대한 외부 인증을 요구하는 공여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협력기관 사전심사 체계(Due Diligence)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인증서는 Humanitarian Accountability Partnership(HAP)과 People in Aid와 같은 전문 기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기준 부합여부 확인하기

- 위험요소 기록
- 자체 감사 도구
- 내부 감사 보고서
- KCS 인증서



Do & Don't 기준 4

- **Do**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 기관의 신뢰도는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위배에 대해 얼마나 적절하고 투명하게 대응하느냐에 달려있다.
- **Don't**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에 대한 책무를 다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책무성은 다양한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방안을 통해 정책의 이행이 보장될때 달성된다.
- **Do** 이행 뿐만 아니라 모니터링과 검토에도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한다. 모니터링 및 검토과정을 통해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방안을 이행한 기관의 노력이 성공적이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모든 아동은 누구든지
어디에 있든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www.keepingchildrensafe.org.uk

info@keepingchildrensafe.org.uk

Charity registration number: 1142328 / © Keeping Children Safe 2016

Photography: Keeping Children Safe/Ben Troester, Christel Kovermann/Terre des Hommes, Keeping Children Safe/Sven Torfinn

Translation: KCOC Child Rights Working Group(ChildFund Korea, Korea NGO Council for Overseas Development Cooperation, Save the Children Korea, World Vision Korea)

Design: www.wave.coop